

제234회 영등포구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이용주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3.

行 政 委 員 會
專門委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405호로 2021년 11월 15일 이용주 의원 외 5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상위법령 변경사항 및 영등포구 구립도서관 명칭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도서관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마을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변경 (안 제22조 및 제26조)

나.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 개정 (안 제25조)

다. 도서관의 명칭 변경 (안 별표1)

라. 신규 회원증 발급 수수료 삭제 (안 별표2)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서관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2021.11.12. ~ 11.16. / 5일 간) 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변경사항 및 영등포구 구립도서관 명칭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도서관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도서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도서관”, “도서관자료”를 법에 따르도록 하고 그 밖에 도서관
관에 관한 용어는 법을 준용하도록 하였음.
- 안 제22조제2항과 제26조에서 “마을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변경하였음.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르면 “공중의 생
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
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을 규정하고, 도서관법
부칙에 이 법 시행 당시 등록·신고된 문고는 제2조제4호가목 개정
규정에 따른 작은도서관으로 본다”고 하여 상위법에 따른 개정임.

- 안 제25조제2항의 도서관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기준을 상위법령인 「도서관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따르도록 정비하였음.
- 안 별표1에서 도서관 명칭을 “정보문화도서관”에서 “도서관”으로 변경한 사항을 반영하였음.
- 안 별표2에서는 현행 신규·재발급시 각각 1매당 1,000원의 수수료를 적용하던 것에서 신규회원증 발급 수수료는 삭제하였음. 도서관 회원증은 모바일 회원증으로 대체되는 추세이며 현재도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노년층이나 초등학생 이하만 회원증을 발급하고 있어 신규회원증 발급 수수료 삭제는 별 무리가 없어 보임.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중복 기재 부분의 삭제, 변경 사항 반영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신규회원증 발급수수료를 삭제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특별한 법률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1 도서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4.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독서활동·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하 “공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 또는 법인(「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하 “사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시설은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
 - 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

제33조(사용료 등) 공공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서 사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2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별표 1의2와 같다.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0. 12. 1.>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제3조제2항 관련)

1. 도서관자료의 교환 및 이관의 기준
 - 가. 보존 및 활용 공간의 효율화
 - 나. 도서관자료에의 접근 및 이용의 편의성
 - 다. 내용의 충실화 및 최신 자료의 확보
2.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
 - 가. 이용가치의 상실 여부
 - 나. 훼손, 파손 또는 오손
 - 다. 불가항력의 재해·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도서관자료의 유실
 - 라. 그 밖에 도서관의 관장(학교도서관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을 말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3.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 또는 그에 준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 경우에는 연간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하여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서관의 관장이 정한다.

제19조(공공도서관의 사용료 등) 법 제33조에 따라 공공도서관이 이용자로 부터 받을 수 있는 사용료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자료 복제 및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
2. 개인연구실·회의실 등 사용료
3. 회원증 발급 수수료
4. 강습·교육 수수료
5. 도서관 입장료(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에 한한다)